



공 보	기 관 의 장

제 1023 호 2016. 8. 25. (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0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8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5호[도로명주소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07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15호[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18호[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0, 3-41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1

안 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9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창조경제과, 안전정보과의 분장사무를 별
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과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삭 제> 8. ~ 53.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과	1. ~ 45. (현행과 같음) 46. 전통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창조경제과	1. ~ 55. (현행과 같음) 19. <삭 제> 20. ~ 58. (현행과 같음) 59.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신 설> 60.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안전정보과	1. ~ 67. (현행과 같음) 68.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임에 관한 사항 <신 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

나. 우리 구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정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조정

○ 자치행정과 → 창조경제과

나. 승강기 관련 업무

○ 창조경제과 → 안전정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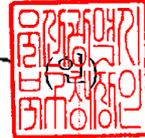
다. 전통공예산업 육성 업무

○ 창조경제과 →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480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부결재 한계(제4조제1항 관련)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새마을금고관리 업무 삭제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실 · 과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6. 새마을금고관리 <삭 제>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기안				○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복지경제국

【창조경제과】 : 승강기 관련 업무 삭제, 새마을금고관리 업무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 장	
		실 무 자	담 당			
28.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나. 승강기 검사의 지연	기안		○		
	다.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기안		○		
53. 새마을금고관리 <신 설>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기안				○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건설도시국

【안전정보과】 : 승강기 관련 업무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실 · 과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51.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나. 승강기 검사의 지연	기안		○		
	다.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기안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어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하고,
- 나. 이와 함께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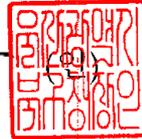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조정 : 자치행정과 → 창조경제과
- 나. 승강기 관련 업무 : 창조경제과 → 안전정보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를 “당직근
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만, 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와 토요일·공휴일 일직
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금·토·공휴일 전일의 숙직 근무자와 토·공휴일 일직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원활한 당직운영을 위하여 휴무일을 보장하고, 재택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휴무
 - 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일의 숙직 근무자와 토요일·공휴일 일직 근무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 재택 당직근무자 수당 지급
 - 재택 당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당직수당을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5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18 (중산동)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척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8.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4길 47-4 (염포동)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8. 25.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증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4길 47-4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000-11	2016-08-25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0길 1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5-1	2016-08-25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6 - 807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였으나,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금 고 수 : 단수금고(1개)
3. 약정기간 : 3년 (2017. 1. 1 ~ 2019. 12. 31)
4. 신청자격
 -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중 우리 구 관내에 영업점(지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 수협중앙회(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5.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 금고업무 관리 능력(22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9점)
 -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불임(별표1)

6. 신청 절차

가. 재공고 및 관련서류 열람

- 재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8. 25. ~ 8. 30.
- 재공고 장소 :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 관련서류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1층 민원실)

나. 신청(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8. 25. ~ 8. 30. 18:00 까지
-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1층 민원실)
- 제출부수 : 11부
-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신청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 제출방법 : 방문제출

7. 심사·평가 방법

- 우리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평가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 ※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임
-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 기타「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심사·평가

8. 금고의 주요 기능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구 소유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구 금고로 지정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항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함
-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며, 앞으로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 타

- 신청(제안)서는 우리 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제안서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단, 금융 기관별 순위 결정, 적격성 심의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익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1점)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른다.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2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9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 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815호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내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내부업법” 이라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8. 25 ~ 2016. 9. 26(33일간)
3. 소재확인 대상업체 내역 :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6-울산북구-0001	MISOIN대부	허대겸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38, 302호(명촌동, 솔레미움)
16-울산북구-0002	MISOIN대부중개		

4. 공고내용

- 해당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북구청 창조경제과로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업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 문의 및 소재확인 통지처 : 창조경제과 (052-241-770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북구청 6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8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0, 3-41호선)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북구 매곡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0, 3-4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6 ~ 2018(23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0, 3-41호선)사업(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일원	도로확장 L=640m B=25~30m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로 201(신정동)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매곡 진입도로 확장공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도로1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	2016.08.25. ~2016.09.08(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08.25. ~ 2016.09.08.(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도로1팀(☎052-229-5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권리자	주소	권리
1	신천동	221-31	전	168	168	울산광역시				
2	신천동	221-21	도	63	63	울산광역시				
3	신천동	221-13	도	274	274	울산광역시				
4	신천동	221-14	재	162	162	울산광역시				
5	신천동	221-1	천	149	149	울산광역시				
6	신천동	220-7	전	34	34	서천군	홍수단 울산리 67			
7	신천동	220-2	도	7	7	진황대	울산 북구약수3길 116-1(울산동산142-8)			
8	신천동	220-3	터	155	155	울산광역시				
9	신천동	220-3	터	347	347	울산광역시				
10	신천동	745-73	천	156	136	울산광역시				
11	신천동	745-173	터	66	66	울산광역시				
12	신천동	219-3	전	7	7	울산광역시				
13	신천동	745-52	도	5261	5261	국(국토교통부)				
14	신천동	745-53	재	5739	5546	국(국토교통부)				
15	신천동	745-118	천	71552	394	국(국토교통부)				
16	신천동	219-3	도	14	14	강병훈	울산 북구호계로327 3,4C9호(신천동 귀영아파트)	주식회사 경남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부산광역시 남구 모현동 1228-5	지상,근저당 근저당
17	신천동	745-72	터	110	110	울산광역시				
18	신천동	745-220	터	6	6	울산광역시				
19	신천동	745-71	천	47	47	울산광역시				
20	신천동	745-113	도	38	38	울산광역시				
21	신천동	745-216	터	3	3	이상현	울산 남구 삼산동 1598-12,4C3호			
22	신천동	745-219	전	120	120	울산광역시				
23	신천동	745-214	터	246	246	울산광역시				
24	신천동	745-215	터	7	7	이상현	울산 남구 삼산동 1598-12,4C3호			
25	신천동	745-218	터	70	70	울산광역시				
26	신천동	745-213	터	115	115	허태연	울산 동구 서부동 482-32			
27	신천동	745-212	터	283	283	김방미	경북 칠성군 삼남면 우리리213			
28	신천동	745-211	천	48	48	울산광역시				
29	신천동	745-222	중	283	283	울산광역시				
30	신천동	745-134	터	153	153	소관련	북구 신천동 745-61			
31	신천동	745-210	터	54	54	조광렬	북구 신천동 745-54			
32	신천동	745-209	터	194	194	황유준	호계리 714-??			
33	신천동	745-208	천	80	80	조영상	울산 남구 아음동 878호 대채슬롯드아파트105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근저당
34	신천동	745-221	천	105	105	조영상	울산 남구 아음동 878호 대채슬롯드아파트105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근저당
35	신천동	745-217	천	201	201	조영상	울산 남구 아음동 878호 대채슬롯드아파트105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근저당
36	신천동	163-3	터	649	549	울산광역시				
37	신천동	745-237	천	507	507	울산광역시				
38	신천동	745-59	천	283	283	울산광역시				
39	신천동	158-18	장	90	90	울산광역시				
40	신천동	745-132	장	317	317	울산광역시				
41	신천동	745-223	전	1073	1073	울산광역시				
42	신천동	745-231	상	783	783	울산광역시				
43	신천동	745-236	장	331	331	울산광역시				
44	매곡동	795-236	천	13853	354	국(국토교통부)				
계				104783	19935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사서

연번	소재지	시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관계	
						성명	주소	권리자	주소	권리
1	신원동	745-215	화상실	블록소	6.03㎡	이상권	울산 남구 심산동 1598-12, 203호			
2	신원동	745-213	주택	벽돌조, 스테트	71.70㎡	하태여	울산 동구 시부동 482-92			
3	신원동	745-212	화장실		7.50㎡					
			주택	벽돌조, 스테트	157.90㎡	김남미	경북 울성군 신내면 우라리 2-3			
			주택	스테트	109.10㎡					
4	신원동	745-164	창고		3.24㎡					
5	신원동	745-210	정교	벽돌조, 슬라브	189.80㎡	조광렬	북구 신원동 745-64			
			정교	벽돌조, 슬라브	189.80㎡					
			주택	벽돌조, 슬라브	189.80㎡					
6	신원동	745-209	창고	벽돌조, 스테트	39.70㎡	황응은	후구리 7-4-22			
			주택	벽돌조, 스테트	60.00㎡					
			성포	벽돌조, 스테트	40.20㎡					
7	신원동	745-217	철구조물, 인타이너	정교(조이스스)		소영성	울산 남구 이물동 878롯데캐슬월드아파트 106-1502	수석회사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범일동	근거없음
계					1065.3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수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관리자	주소	관리	
1	신진동	745-52	도	526'	5261	국(국토교통부)					
2	신진동	745-53	세	5739	5513	국(국토교통부)					
3	신진동	745-118	천	7'552	394	국(국토교통부)					
4	대곡동	795-266	천	13853	354	국(국토교통부)					
계						11557					

